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02-2133-7310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02-2133-7336
담당자	김미연	02-2133-7338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6쪽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기준 완화...약자와의 동행 적극 추진

- 경제위기 상황속 취약계층 절대 빈곤을 방지하고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 4월부터 소득공제율 상향(30%→40%),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으로 상향
-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하여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46% 이하→47% 이하) 완화,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저소득층 지원 강화 노력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사례

이모씨(만41세, 강서구)는 어린자녀 둘을 키우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 씨는 최근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고 일용근로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생활도 힘들어져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씨는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로 연계되어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며, 22년 9월부터 매월 52만 4천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①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②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③만19세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 등이다.

<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금년 4월부터는 40%로 확대되었다.

- 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가 있으며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현행 소득공제율	변경 소득공제율
30%	40%
(월소득이 80만원으로 가정)	(월소득이 80만원으로 가정)
→ 소득평가액 : 56만원	→ 소득평가액 : 48만원

<② 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

-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신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인가구 및 저가주택 보유자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현행 재산 기준
1억 5,500만원



변경 재산 기준
최대 재산기준 2억 5,400만원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까지 공제)

<③ 만19세이하 자녀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

-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금융재산기준
3,600만원



변경 금융재산 기준
만19세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1,000만원 추가 공제

-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이하에서 47%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소득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 22년(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 23년(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 생계급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대지원액	' 22년	291,722원	489,013원	629,205원	768,162원	903,678원	1,036,051원
	' 23년	311,684원	518,423원	665,223원	810,145원	949,603원	1,084,197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 처리기한은 공적자료 조회 회신 및 신청인 추가 서류 제출 등을 감안하여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
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주요 변경사항 1부.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개요 1부. 끝.

'23년 주요 개정 사항

① 서울형 기초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 155백만원 → 최대 254백만원 상향(주거용 재산에 한해 99백만원 추가 공제)
- 금융재산 특례 신설 : 만19세 미만 자녀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천만원 공제 특례

② 서울형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완화

-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30% → 40% 상향
- 기준 중위소득 46% → 47% 적용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 22년(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 23년(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③ 서울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 : 4인가구 기준 5.47% 인상

- 생계급여액: 4인가구 768,162원 ⇒ 810,145원(월41,983원 인상)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대 지원액	' 22년	291,722원	489,013원	629,205원	768,162원	903,678원	1,036,051원
	' 23년	311,684원	518,423원	665,223원	810,145원	949,603원	1,084,197원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선정기준 : 소득,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재산기준 : 가구당 재산액 1억 5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 재산기준 :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에 한해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 :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

- 부양의무자 기준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5월 시행)
 ※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1억원)·고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지원내용

-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1구당 800천원)
-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서울형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1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변동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지원액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최소지원액	소득평가액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생계급여	103,895	172,808	221,741	270,048	316,534	361,399

□ 지원현황 : 4,779가구 6,144명('23년 2월말 기준)

□ 사업예산 : 14,519백만원(시비100%)